

CCTV설치운영규정

2009.12.01.제정 2011.04.18.일부개정 2012.08.01.일부개정 2017.03.01.일부개정
 2022.04.01.일부개정 2025.05.01.일부개정

<캠퍼스시설안전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 시설물 내 공공업무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각종 안전 사고 및 화재예방 등 시설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(개정 2025.5.1.)

1. 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4.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5. “관리책임자”라 함은 CCTV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자는 자를 말한다.
6. “총괄책임자”라 함은 CCTV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담당부서 및 책임관) ①CCTV와 관련된 유지보수 및 관리,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는 캠퍼스시설안전팀에서 관할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7.03.01., 2022.4.1., 2025.5.1.)

②제1항과 관련하여 총괄책임자는 사무처장이 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25.5.1.)

제4조(설치장소)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필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설치한다.

1. 건물별 주, 부출입구
2. 건물별 복도
3. 자유열람실 내부등
4. 기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실

제5조(CCTV 현황 비치) CCTV의 설치 현황은 종합방제실내 비치토록 하며, 캠퍼스시설안전팀에서 관리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 2025.5.1.)

제6조(보호조치) ①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
②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필요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7조(화상정보 자료의 보유 및 삭제) ①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DVR(Digital Video Recorder)에 저장하고 하드디스크의 용량 및 녹화시간에 따라 저장시간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한다.

②저장기간이 경과된 화상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현재의 화상정보가 녹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CCTV는 24시간 동작을 원칙으로 하며 센서에 의하여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되어야 하며 화상정보의 저장기간은 **최대 30일**로 하되 데이터 용량 및 선명도에 의하여 저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(개정 2025.5.1.)

④필요시 수집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백업목적이 소멸된 자료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

제8조(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제한)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할 수 없다.

②설치된 CCTV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. (개정 2025.5.1.)

③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.

제9조(안내판의 설치) CCTV 녹화중 안내문은 건물별 주출입구에 부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
1. 설치목적
2. 촬영범위
3. 담당부서 및 연락처

제10조(CCTV 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) ①CCTV 담당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장비의 상태 및 운영상황을 점검한다.

②장비의 정비 및 백업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 관리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11조(열람 등의 요청) ①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책임자와 정보주체자과 함께 하여야 열람할 수 있다. (개정 2025.5.1.)

②화상정보의 열람 요청시에는 서식 제1호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접수 후 열람할 수 있으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에 의거 거부할 수 있다. (개정 2025.5.1.)

③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서식 제2호 이용·제공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한다. (개정 2025.5.1.)

제12조(준용 규정)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», 「통신비밀보호법», 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», 「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」 등을 준용한다. (개정 2025.5.1.)

부 칙

본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서식 1] 개인영상정보(열람, 존재확인) 청구서 (개정 2025.5.1.)

개인영상정보(□ 열람 □ 존재확인) 청구서				처리기한
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10일 이내
청 구 인	성 명		전 화 번 호	
	생년월일		정보주체와의 관계	
	주 소			
정보주체의 인적사항	성 명		전 화 번 호	
	생년월일			
	주 소			
청구내용 (구 체 적 으 로 요청하지 않 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	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2018.01.01 18:30 ~ 2018.01.01 19:00)		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(예 :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)		
	청구 목적 및 사유			
<p>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,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년 월 일 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명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	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			시설안전팀 담당자	

